

2025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 R&D, 기술보호, 수출, 병역특례, 자금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분야	사업명	우대사항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1점
기술 보호	중소기업기술거래활성화지원사업	가점 1점
지역 특화 산업	지역주력산업 비R&D	가점 2점
	시군구연고산업	가점 2점
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	가점 1점
수출	온라인수출플랫폼	가점 2점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가점 2점
	수출 바우처	가점 1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가점 1점
	수출 컨소시엄 사업	가점 1점
판로	중기간경쟁입찰참여시, 신인도	가점 2점
자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3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공고일 기준)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공고일 기준)

< 업력 산정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명문장수 확인기준 가이드북](7. 기타 및 문의사항 참고) 내 업력 평가지표 참조

□ 제외사항

-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임)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 제외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업종분류를 준용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접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의 합이 직접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1개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접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이 직접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양식)
-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붙임3 양식)
-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붙임4 양식)
- 첨부서류

법인기업	개인기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8~'23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8~'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7. 직전년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중견기업에 한함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8~'23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8~'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5. 직전년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중견기업에 한함

□ 신청기간 : '25. 4. 14.(월) ~ 5. 13.(화)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접수

(중소기업 : mmjs@kbiz.or.kr / 중견기업 : mscho@fomek.or.kr)

- 전체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확인신청서(붙임 1), 서면평가자료(붙임 4)는 이메일로도 제출
 - * 반드시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25.5.13.)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구분	문의처	우편 제출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	02-2124-3147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02-3275-3127

5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 '25. 4. 14.(월) ~ 4. 30.(수)
 - 추천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민원참여>국민참여>국민추천>명문장수기업 확인]에서 기업 추천
 - 추천기간 동안 추천을 받은 기업에 추천 사항 및 명문장수기업 신청 안내
 - 국민 추천을 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 구비서류, 평가항목 및 평가과정 등 모든 과정은 추천받지 않은 기업과 동일

6 평가 및 확인

□ 세부일정 및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추진일정
① 요건확인	▪ 업력, 업종,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 신청자격 구비여부 확인(필요시 서류보완)	'25.4~5월
② 서면평가	▪ 업력(45년 이상), 경제적 기여(매출·이익 등), 기업혁신(R&D) 분야 평가	'25.5~6월
③ 현장평가	▪ 사회적 기여(사회공헌, 근로환경 등), 기업역량(특허, 수상실적 등), 가점(수출·고용창출) 평가	'25.6~7월
④ 평판검증	▪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지역평판, 사회적 물의 여부 등에 대해 공개검증	'25.8월
⑤ 심의·확정	▪ 평가 및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적합여부 심의·확정	'25.9월

* 추진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 (55년 이상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3점) 참여 기업
- ☞ 평가점수 80점 이상(가점 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인(세부사항은 붙임5 참조)

7 **기타 및 문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운영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평가지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www.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 2025년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참조
-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문의처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	02-2124-3147 02-2124-3148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02-3275-3127
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044-204-7452 044-204-7455

[붙임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7.26>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기업구분(법인기업/개인기업)
	대표자명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번호	최근결산일자
	사업장 주소	
	주업종	업종코드(세분류)
담당자정보	성명	직위
	휴대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귀중

	법인기업	개인기업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최근 6년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지정된 기업 : 확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미지정된 기업 :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p>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 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동의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p>		

2.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보유·이용기간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나이스평가정보(주)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지정된 기업 : 확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미지정된 기업 :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p>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 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확인 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동의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p>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 . .

기업명 :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귀중

[붙임3]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 확인 후보기업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위 본인은 확인 후보기업으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확인의 취소 등 확인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확인된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6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규준수(필수 충족)

- 인권·노동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판결 건수 0건
-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판결 건수 0건
- 공정운영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판결 건수 0건
- 제품·서비스·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판결 건수 0건
-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안전부)에 의거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내용은 최근 3년간, 법인 혹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함

2. 확인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확인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귀중

[붙임4]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

1. 기본정보

기업명		주요제품	예) 볼트, 너트, 단조품 외
창업연도		업종코드(중)	예) (C25)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증빙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2. 연도별 상시 고용인원

(단위 :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 연도별 매출액

(단위 :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 연도별 영업이익

(단위 : 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 자본과 부채

(단위 :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본					
부채					

6. 연구개발비

(단위 : 원)

구분	경상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매출원가)	당기개발비(무형자산)	전기개발비(무형자산)	무형자산상각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제출하는 상기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귀중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구분	지 표(점수)		세부기준(안)	비고
장수 (60)	업력(60)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주된 업종 변경 없이 45년 이상 - 45년 50점, 1년당 1점 추가, 55년 이상 60점	
명문 (40)	경제적 기여 (12)	장기고용유지(3)	최근 5년 평균고용률 $\geq 100\%$	필수지표 외 지표 2개 이상 충족
		매출액증가율(3)	최근 5년 매출액증가율 \geq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3)	최근 5년 영업이익률 평균 \geq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3)	최근 5년 부채비율 평균 $\leq 150\%$	
		법인세납부 실적(필수)	최근 5년 체납 사실 없을 것	
	사회적 기여 (16)	법규준수(필수)	최근 3년간 관련 법규위반으로 법원 유죄 판결 0건,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각 지표별 기본 점수의 가·감점 포함 점수
		임직원 인권존중(1.5)	인권 행동지침,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고용 및 근로조건(2)	노사관계 제도화, 인재개발 노력 등	
		오염방지(2)	대기·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 등	
		지속가능한 자원이용(2)	원부자재,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감축 등	
		안전 및 보건(1.5)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 시행, 산업재해율 등	
		반부패 및 공정경쟁(1.5)	반부패 및 공정경쟁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제품 및 서비스 책임(1.5)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사회공헌(2)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봉사활동 시간 등	
기업 역량 (9)	브랜드/특허/제품(9)	브랜드 인지도 국내·외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건수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 주력 제품(서비스) 국내·외 시장점유율 신기술·신제품 등 인증 기술·품질 관련 수상 실적		
		기업 혁신 (3)	연구개발비 비중(3)	최근 5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geq 업종별 평균
가점 (6)	수출 기여(3)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geq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 기여(3)		일자리창출 정책 참여 유무	
종합 (106)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가점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명문 장수기업 확인			